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재정정보원 업무 위탁 범위에 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 추가〉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17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국재정정보원 업무 위탁 범위에 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 추가(안 제26조의7제4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영진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12. 9.

다. 회 부 일 : 2025. 1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되, 통합관리망의 운영·개선, 보조금관리정보 및 금융·신용정보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장점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현장점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재정정보원 업무 위탁 범위에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에 기반에 합리적 업무 위탁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7제4항제5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한국재정정보원 업무 위탁 범위에 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 추가(안 제26조의7제4항)

현행	개정안
○ 한국재정정보원 업무 위탁 범위 -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 보조금관리정보 및 보조사업자등에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와 전자적 자료에 관한 업무 - 대국민 포털의 관리에 관한 업무 <신 설>	○ 한국재정정보원 업무 위탁 범위 - (현행과 같음) - <u>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조사 업무</u>

현행법상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총괄하되,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①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② 보조금관리정보 및 제26조의3제1항1)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8까지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3.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기기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5.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나.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무, ③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
의 전자적 지원에 관한 업무, ④ 제39조의3제1항2)에 따른 대국민 포털
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장관이 보
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보조금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기획예산처장관이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는 업
무의 범위에는 현장조사(이하 “현장점검”이라 함)에 관한 사항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실제로는 한국재정정보원이 기획예산처장
관의 위탁을 받아 부정 수급 현장점검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인바,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
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는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바.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7.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
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대국민 이용 지원)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 또
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국민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업무 범위에 현장점검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법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동 개정안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부정징후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실무 전반을 담당³⁾하는 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해 위탁 근거를 현행법상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내외적인 업무 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부정 수급’에 대해 현행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⁴⁾와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⁵⁾로 규정하고 있으

3)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활용한 부정징후의심사업 추출, 부정징후 패턴 개발, 합동점검을 위한 고위험군 사업 선별 및 실제 현장점검과 조사·분석 등을 수행함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며,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허위 신청·서류 제출·중복 지원 등 부정 수급 여부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6년도 예산에서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운영(정보화)」 사업으로 총 173억 9,100만원의 사업출연금을 편성하고, 이 중 12억 6,000만원을 부정 수급 현장점검 위탁 비용으로 책정하였음.

그런데 「국가재정법」상 출연금은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현행법상 현장점검 업무가 위탁 업무로 명시되지 않아 해당 비용을 사업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부정 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현장점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점검 업무 성격에 대한 수정을 통해 법적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현장점검은 시스템을 통한 부정 수급 모니터링의 실시 후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조치에 해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위탁 업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현장점검이 부정 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부수적·보조적 수단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위탁 업무의 성격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상의 체계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의 부정 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현장점검 업무”로 수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065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① ~ ③ (생략)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 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 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⑤ (생략)	법률 제21065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 검 업무</u> ⑤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2